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- 133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(법률 제10894호)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(이하 “기준보수”라 함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고용노동부장관

□ 고시내용

1.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·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
1등급	1,820,000
2등급	2,080,000
3등급	2,340,000
4등급	2,600,000
5등급	2,860,000
6등급	3,120,000
7등급	3,380,000

2. 법 부칙(법률 제10894호)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

월 2,600,000원

3. 기준보수의 적용기간 :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